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10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10월 9일

3. 제안이유

-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공간이 요구되어
- 노후된 충주시 노동회관을 철거하고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에 의하여
-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재산의 처분 >

- 대 상 : 충주시 충의동 1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토지 866㎡ (4필지)
- 재산가액 : 411,283천원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임)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

- 규 모 : 부지 906㎡(274평), 건축 2,409㎡(730평, 지하1, 지상3층)
- 사 업 비 : 2,956백만원(국비 1,153, 도비 250, 시비 1,553)
- 추진기간 : 1999년 ~ 2002년 (계속사업 추진)

5. 검토의견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도유재산인 충주시 충의동 14번지의 외 3필지 866㎡에 대하여 매각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99년도 (국비 1,153백만원)와 2000년도 (도비 250백만원)에 확보하였는데도,

연초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